



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
영농폐기물(폐비닐, 폐농약용기류)
배출안내

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

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4등급(A, B, C, D)으로 분류하며 D등급 판정 시 수거를 거부 및 재선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(단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3등급제로 운영 가능하며 3등급으로 판정 시 동일)

● 수거등급판정기준

등급	폐비닐 상태	비고
A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육안판단 후, 식물 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었고, 재질별(하우스·멀칭로덴·하이덴 등) 색상별 선별된 상태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 거의 없는 상태 별도 선별과정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	적정 선별품 (유상공급 가능품질)
B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육안판단 일부 후, 식물 잔재물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별되어 있고, 재질별(하우스·멀칭로덴·하이덴 등) 색상별 미선별 상태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일부 수분 침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	미선별품 (선별과정 요구품질)
C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후, 식물 잔재물 등이 제거되지 않았고, 재질별(하우스·멀칭로덴·하이덴 등)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	이물질 함유품질
D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후, 식물 잔재물,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, 농장재, 철선, 폐마대, 돌 등 폐비닐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 	등외품질

등급별 수거보상금 지급단가 적용기준은 이물질 상태에 따라 상·하 각각 20% 이상 차등지급됩니다.

● 수거등급 A등급, B등급, C등급에 따른 수거보상비 지급 표준(안)

등급	적용단가	적용비율	비고
A급(인센티브)	140원/kg	15~25%	지자체 평균단가 100원/kg 기준
B급	100원/kg	40~50%	
C급(디스인센티브)	60원/kg	15~25%	

※ D등급(최하 등급) 판정 시 수거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


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
영농폐기물(폐비닐, 폐농약용기류)
배출안내

폐농약용기 수거가능 품목

살균제 : 바탕색은 분홍색



살충제 : 바탕색은 녹색



제초제 : 바탕색은 황색



생조제 : 바탕색은 청색



비선택성제초제 : 바탕색은 적색



기타약제 : 바탕색은 백색



폐농약용기 분리배출 방법

-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, 봉지류만 그물망, 마대등에 모아서 배출하여 주세요.
- 영양제 및 친환경·유기농 농약 등 유사용기는 수거 안합니다.(해당 지자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)

- 한국환경공단의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수거 대상은 영농대상자에 한 해 수거합니다.
- 폐농약은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「일반가정과 민간사업장의 폐농약 용기(폐농약 포함) 분리 배출 문의는 지방자치단체」

www.recycling-info.or.kr/hongsa



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

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환경조성을 위한
영농폐기물(폐비닐, 폐농약용기류)

분리배출 안내



배출·수거 문의 대표번호 **1661-6620**

아래 궁금사항 연락하세요

우리마을 공동집하장, 수거사업소는 어디있을까?

배출 및 수거 방법은 어떻게 될까?

수거보상비, 지자체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?

기타 영농폐기물 정책 문의사항



한국환경공단 배출·수거 안내

농민이 영농활동 후 폐농약용기류 배출시 이물질 및 농약 유사 용기가 다량 혼입되게 배출되어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검열을 통한 이물질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배출자 실명제를 운영합니다.

영농폐기물(폐농약용기류, 폐비닐 등) 배출시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 또는 가까운 공단운영 수거사업소로 운반(배출자 책임운반)하여 주시면 됩니다.

●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 현황(지역본부·지사 작성영역)

구분	주소	농약용기류 반입일자
제주수거사업소	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670-28	월요일 / 수요일

영농폐기물 수거 안내처

지역본부·지사 작성영역
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팀
 • 주소 :
 • 연락처 :

대표전화
 농업용 폐비닐과 빈 농약용기 수거 문의는 **ARS 1661-6620**으로 문의해 주세요.



관련법령

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(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)

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, 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.
 - 한국환경공단



영농폐기물(폐비닐, 폐농약용기) 분리배출 흐름도



※ 농약용기 수거단가는 매년 실시하는 농약용기 회수사업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01 발생(농가·마을)

- 농약은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수거 (마대 배출)
- 폐비닐은 흙,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(하우스, 로덴, 하이덴) 구분하여 배출

02 분리배출(공동집하장)

- 분리수거된 폐비닐, 폐농약용기를 지자체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(배출자책임운반)

03 수거(한국환경공단-민간위탁수거사업자)

-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되어 모아놓은 폐비닐, 폐농약용기류 수거·운반

04 전표발행(한국환경공단)

- 반입된 폐비닐,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전표 발행

06 처리(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)

05 수거비 지급(지자체, 한국환경공단)

지급	A급비닐	B급비닐	C급비닐
지자체	140원/kg	100원/kg	60원/kg

※ 지자체별 지급 단가는 상이함

지급	농약유리병	농약플라스틱	농약봉지
공단	100원/개 (300원/kg)	100원/개 (1,600원/kg)	80원/개 (3,680원/kg)

※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(농가·마을)에 지급

**영농폐기물
(폐비닐, 폐농약용기)
분리배출 흐름도**